

선	기관의 장
람	

제 151호

2026년 8월 13일 (목)

차

레

공 고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공고 제2026-4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공고 제2026-35호	팔탄면 4기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86호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87호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88호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89호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90호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93호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94호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95호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의회 공고 제2026-96호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시

화성시 고시 제2026-715호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26-71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화당지구 지구내 도시 계획시설(도로, 녹지) 조성사업 -

회									
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수취인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3.

화 성 시 만 세 구 우 정 읍 장

- 1.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
- 2.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48조 및 제 84조
- 4. 공고기간 : 2026. 8. 13.(목) ~ 2026. 9. 4.(금) (22일간)
- 5.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

성 명	주 소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내용
한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화수리 972-9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500,000원

6. 공시송달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 나.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시려면 화성시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납부 가능)
- 다. 아울러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할 때마다
증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처분에 불복이 있으실 경우,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31-5189-1960). 끝.

팔탄면 4기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팔탄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8. 13.(목) ~ 2026. 8. 21.(금)
2. 모집인원 : 11명
3. 임 기 : 위촉일부터 2027. 12. 31.까지
4. 신청자격

주요내용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팔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팔탄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팔탄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팔탄면을 거소지로 하여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팔탄면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상 사전 이수 또는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사후 이수 필수

※ 해당 교육의 이수 효력은 해당 위원의 임기 내로 한다

5. 위원 결격사유

- 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 나. 제9조에 따른 구성관리위원회의 위원
- 다.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 라. 법령이나 조례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증빙서류(아래표 참조)

7. 접수방법 :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kej2409@korea.kr) 접수

가.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나. 이메일 접수는 2026. 8. 21.(금) 자정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나. 방문접수 :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5189-3414,2789)

8. 선정방법 : 성별 및 지역 안배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후
필요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심사기준은 성별 또는 지역 안배 등 팔탄면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 제정 기준
용 예정임. 적

9. 선정일시/장소 : 2026. 8. 24.(월) 11:00 /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세미나실

10.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11. 임무 및 참고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나. 주민자치회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지역 축제, 지역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회의, 활동, 교육 등
-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화합을 위한 주민자치사업, 지역행사, 자원봉사활동 등
- 기타 읍·면·동과 관련된 지역사회활동 등

라.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12. 문 의: 팔탄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5189-3414,2789)

2026. 8. 13.

팔탄면장

화성시 팔탄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남, 여)	이메일	
주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선정 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증빙자료 외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주민자치교육 이수여부	☐ 이수 ☐ 미이수 ※ 시장이 인정하는 교육 6시간 이상 이수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위촉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지원사유 (신청자 작성)			
활동내용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화성시 팔탄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귀하

화성시 팔탄면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화성시 팔탄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화성시 화산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이메일 주소, 경력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3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화성시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화성형 주민자치회 실시를 위한 통계수집·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 정보제공 등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3년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팔탄면 주민자치위원 선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남, 여)	이메일	
주소			
제출목적	2026년 팔탄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지원		
확인사항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제9조에 따른 구성관리위원회의 위원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4. 법령이나 조례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명시된 위원 선정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확인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에는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위원의 해촉)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주민자치위원 해촉 처분 및 민·형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귀하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

3. 주요내용

가. 의장이 의결을 통해 시책일몰을 시장에게 권고(안 제5조).

나. 시책일몰 권고의 대상을 열거(안 제6조).

다.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라.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에 대해 정함(안 제8조).

마. 일몰 시책 공개 규정 마련(안 제11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김상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8.

발 의 자: 김상균, 배현경, 조정옥,
박진희, 박진섭, 유상희,
정명희 (7명)

1.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

2. 주요내용

- 가. 의장이 의결을 통해 시책일몰을 시장에게 권고(안 제5조).
- 나. 시책일몰 권고의 대상을 열거(안 제6조).
- 다.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라. 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에 대해 정함(안 제8조).
- 마. 일몰 시책 공개 규정 마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략
- 나. 기타:

화성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시책 등의 전년도 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의·결정하여 폐지 또는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화성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시책 등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화성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일몰의 권고) 화성시의회의 의장은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일몰대상 사업의 선정은 제6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의안제안(건의안)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일몰의 심의·결정 및 권고의 대상이 되는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화성시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정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
7. 그 밖에 시장이 일몰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화성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의 일몰처리)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② 경미한 시책의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일몰이 결정된 시책 등을 화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일몰 시책 공개)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하여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 1. 1.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소 :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민의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화합사업의 추진 및 화성 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성시민화합협의회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시민화합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사업 열거(안 제3조).

다. 한마음화합마당 등의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4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영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8.

발 의 자: 위영란, 조정옥, 유상희,
정명희, 박진섭, 배현경,
박진희, 김상균, 최은희
(9명)

1. 제안이유

화성시민의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화합사업의 추진 및 화성 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성시민화합협의회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민화합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사업 열거(안 제3조).
- 다. 한마음화합마당 등의 지원사업 근거 마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략
- 나. 기타:

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화합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화합사업의 추진 및 화성시민화합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화성시민화합협의회”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광역단위 향우회가 시민화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결성한 연합단체를 말한다.
2. “한마음화합마당”이란 화성시민화합협의회가 시민화합을 위하여 추진하는 문화·체육행사를 말한다.

제3조(사업)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화합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주요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
2. 시정발전을 위한 화성시민화합협의회와의 간담회
3. 그 밖에 시민화합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화성시민화합협의회가 추진하는 시민화합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마음화합마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 주최의 간담회 및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화성시민화합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시홍보 기념품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소 :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의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말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어, 화성시 말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국·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안 제5조).

나.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정함(안 제6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8.

발 의 자: 김정주, 박진희, 김상수,
고병태, 김창겸, 오문섭,
김상균, 이은진 (8명)

1. 제안이유

화성시의 말산업특구 지정에 따라 말산업의 체계적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어, 화성시 말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국·소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안 제5조).
나. 말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략
나. 기타: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시장”을 “국·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설치할 수 있다</u> .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 ----- ----- ----- ----- <u>설치해야 한다</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생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u>국 · 소 장</u>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일비 등) ① (생략)	제12조(일비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소 :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부족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노인 생산 농산물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

3. 주요내용

가. 노인(65세 이상)이 생산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 확대(안 제4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8.

발 의 자: 김상수, 이민희, 김창겸,
배현경, 김정주, 김상균,
정명희 (7명)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부족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화성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노인 생산 농산물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

2. 주요내용

가. 노인(65세 이상)이 생산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 확대(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 략
- 나. 기 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노인(65세 이상)이 생산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 확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10. (생략) <u><신설></u> <u>11.</u> (생략) ② (생략)	제4조(재단의 사업) ① ----- ----- ---. 1. ~ 10. (현행과 같음) <u>11. 노인(65세 이상)이 생산 한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의 유통 및 판로 확대</u>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소 :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버스정류소와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버스정류소 및 편의시설 범위와 종류를 정의(안 제2조).

나.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함(안 제5조).

다. 버스정류소의 설치 제한 기준을 열거(안 제6조).

라.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steave@korea.kr

- 전화: 031-5189-3914

- 팩스: 031-5189-1523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오문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6. 8.

발 의 자: 오문섭, 최청환, 김상균,
송현미, 정순영, 최태양,
김정주, 김상수, 고병태
(9명)

1. 제안이유

화성시 버스정류소와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버스정류소 및 편의시설 범위와 종류를 정의(안 제2조).
나. 버스정류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정함(안 제5조).
다. 버스정류소의 설치 제한 기준을 열거(안 제6조).
라.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생략
나. 기타:

화성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버스정류소와 편의시설 및 그 주변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정류소에 부가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표지판
 - 나. 승강장
 - 다. 의자
 - 라. 승차대
 - 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 바. 그 밖에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4. “정차범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보도에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강장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단 표지판과 승강장이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10미터 이내인 곳
 - 나. 도로에 정류소임을 표시하는 정차면이 설치된 경우 해당 정차면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설치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정류소 및 편의 시설 등(이하 “정류소 등”이라 한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류소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류소 등의 주변 보도 상에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경우 각 시설물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화롭게 설치 및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3. 정류소 등은 「화성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화성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정류소 등의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
5. 정류소 등은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6. 편의시설의 설치 시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야가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7. 정류소 등에 흡서 및 흡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현황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정차범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통해 시민의 버스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 주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정류소 등의 기능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정류장 등의 손상된 부분이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정류소에 대해 철거, 이설 및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시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정류소 등과 주변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류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정류소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소 :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을 발굴하여 화성시의회 입법 활동 및 화성시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아이디어의 심사 및 입상자 선정, 시상금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제출·보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 나.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
- 다. 입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라. 입상한 정책 아이디어의 의정활동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마. 입상 취소 및 정책 아이디어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민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이민회의원

1. 제안이유

화성시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을 발굴하여 화성시의회 입법 활동 및 화성시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아이디어의 심사 및 입상자 선정, 시상금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공모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제출·보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6조)
- 나.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
- 다. 입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라. 입상한 정책 아이디어의 의정활동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마. 입상 취소 및 정책 아이디어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화성시의회의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 화성시의회의 의정 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아이디어”란 화성시 입법 및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발전 방안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자가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나. 화성시·중앙행정기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 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
 - 라.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가 아닌 사항
2. “제안자”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민으로 의회에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거나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제안서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중복제출을 제한하는 공모전의 경우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제4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제3조(정책 아이디어의 공모 등) ①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입법 활동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주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시기와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정책 아이디어의 제출 등) ①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 아이디어는 개인 신청만 가능하며, 각 공모별로 한 사람당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해당 공모의 마감일까지 의회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제5조(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도의 활성화)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아이디어의 보완) 의장은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형식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을 정책 아이디어 제출일로 본다.

제7조(정책 아이디어의 심사) ①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에 따른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시설·단체 등에 관련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책 아이디어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세부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노력의 정도

제8조(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7조제2항의 심사 기준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의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입상 여부 및 입상 등급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2명

2. 의장이 지명하는 의회 소속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정책 또는 입법전문가

나.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입상여부의 결정 등)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상 대상자를 선정·공고한다.

② 의장은 입상한 제안자에게만 결과를 따로 통보하며, 입상하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그 결과를 따로 통보하지 아니한다.

③ 정책 아이디어의 입상 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입상대상자는 5인 이내로 결정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없으면 입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입상대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입상대상자의 선정은 「화성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화성시의회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⑥ 의장은 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상대상자를 제외한 공모전에 참여한 제안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서류의 반환 등) 제안자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에 첨부된 서류들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정책 아이디어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제16조(정책 아이디어의 반영) 의장은 입상한 정책 아이디어가 입법 활동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서 등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7조(입상의 취소 등) ① 의장은 입상자를 선정한 이후에도 입상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거나 정책 아이디어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상을 취소한 경우에 입상자로부터 수여한 상장과 지급된 시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①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응하여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제안자가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의회는 입상자가 제출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금을 사용대가로 하여 해당 공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의장은 입상자의 정책 아이디어를 해당 공모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입상자와 사용범위와 대가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 정책 아이디어 공모 제도 운영에 관계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기준

○ 시 상 금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2명)
100만원	각 60만원	각 40만원

※ 시상금 기준은 심사 결과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상금은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음.

제 목

접수번호

(공란)

□ 현황 및 문제점

(작성내용)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아이디어 내용(개선방안 및 대책)

(작성내용)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방안 및 문제 해결 내용을 기술

- 정책 수혜 대상(범위), 실시 방법, 실시 내용
-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개선되는 제도 내용 등

□ 기대효과

(작성내용)

정책 아이디어 실시 결과에 따른 예산 절감, 지방세 수입 증대, 행정 효율성 향상, 대민 서비스 제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셔야 공모전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본 공모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집한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공모 접수에 따른 본인 확인 및 공지사항 전달, 시상 등의 참가자 관리와 입상작 활용 등 안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개인정보 수집 방법

참가 등록 시 제출한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4. 제공받는 기관

화성시의회

5.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보존사유 : 참가자 및 입상자 관리, 입상작 활용 논의

보존기간 : 1년

6.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에는 공모전 참가 신청 및 작품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

(서명)

법정대리인

(서명)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이 공모전에 참가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소 :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았으나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미래유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유산의 가치 홍보 및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할 지역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다른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 나. 미래유산 보존 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다.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라. 미래유산 보존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미래유산 선정, 홍보,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4.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최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최은희의원

1. 제안이유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았으나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따라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미래유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유산의 가치 홍보 및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할 지역문화 자산을 보존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다른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 나. 미래유산 보존 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다.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라. 미래유산 보존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마. 미래유산 선정, 홍보,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소재 근·현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 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성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 화성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나.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것

2.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미래유산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미래유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미래유산 선정 등)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미래유산 홍보 등)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기타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취소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소 :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직체계에 맞추어 간사의 업무 담당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추진단 및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사의 업무담당 부서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4항)

나.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항)

4.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신동희 · 장철규 · 유지혜 ·
이남근 · 장동희 · 고병태 ·
이민희의원(7명)

1. 제안이유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추진위원회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직체계에 맞추어 간사의 업무 담당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추진단 및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간사의 업무담당 부서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4항)
- 나. 위촉직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항)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체육업무”를 “전국체육대회 업무”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략)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u>체육업무</u>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 ----- <u>전국</u> <u>체육대회 업무</u> -----.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u>한다</u> . 다만,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 폐지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 <u>하되 연임할 수 있다</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소 :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화성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화성시 및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사후점검 의무 대상을 화성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여 시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편의시설 정의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호)

나. 편의시설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4. 입법예고기간: 2026. 8. 13.(목) ~ 2026. 8. 18.(화)

5. 자치법규안: 별첨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입법지원팀

- 전자우편: mckim88@korea.kr

- 전화: 031-5189-3939

- 팩스: 031-5189-2965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김상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 의 자 : 김상균·최은희·위영란·
신미정·김상수·고병태·
김정주의원(7명)

1. 제안이유

화성시 및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 한정
되어 있던 사후점검 의무 대상을 화성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여 시설 점
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와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편의시설 정의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호)
- 나. 편의시설 사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의2)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사전점검 대상)”을“(사전·사후점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전점검”을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점검시기 등)”을“(사전점검)”으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공공편의시설의 사후점검)”을“(사후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사전점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공공편의시설”을 각각 “편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시로부터 2년 이내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2 조 (정 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u>공공편의시설</u> ”이란 법 제2조 제2호의 편의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체가 관리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삭 제>
가. <u>화성시</u>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u>화성시 지방공기업</u>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u>화성시 출자출연기관</u>	
제8조(사전점검 대상) <u>사전점검</u>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8조(사전·사후점검 대상) <u>사전점검</u> 및 <u>사후점검</u> -----.
제9조(점검시기 등) ①·② (생략)	제9조(사전점검)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u>공공편의시설의 사후점검</u>) ①	제9조의2(<u>사후점검</u>) ①
시장은 <u>공공편의시설의 사전점검</u>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후점검 하여야 한다.	----- <u>사전점검</u> ----- -----.
1. 시설주가 <u>공공편의시설</u> 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1. ----- <u>편의시설</u> ----- -----
2. <u>공공편의시설</u> 의 사용자에게 불편 사항이 없는지 여부	2. <u>편의시설</u> ----- -----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시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도 2년마다 사후점검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생 략)

② 최초의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시로부터 2년 이내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화성시 전국체육대회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 :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 ☐ 주소 :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화성시 고시 제2026 - 715호

지적재조사지구 경미한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화성시 한각1지구 등 3개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6. 8. 13.

화 성 시 장

1. 사업명: 화성시 한각1지구 등 3개 지적재조사지구

2. 변경내용

사업지구명 (사업연도)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한각1지구 (2026)	화성시 만세구청	화성시 만세구 우정읍 한각리 26-1번지 일원	148필지 / 116,849㎡ 2026. 1. ~ 2027. 12.	148필지 / 116,827㎡ 2026. 1. ~ 2027. 12.	지구계 분할
신왕2지구 (2026)	화성시 만세구청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신왕리 399-1번지 일원	144필지 / 106,613㎡ 2026. 1. ~ 2027. 12.	145필지 / 106,068㎡ 2026. 1. ~ 2027. 12.	지구계 분할, 사업지구 제외 및 추가
분천2지구 (2026)	화성시 효행구청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분천리 316번지 일원	148필지 / 148,149㎡ 2026. 1. ~ 2027. 12.	150필지 / 148,482㎡ 2026. 1. ~ 2027. 12.	지구계 분할, 사업지구 추가

3.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 토지이동 등

4. 최초 지구지정 고시일 : ‘26. 5. 28.

5. 기타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 2) 기타 관계서류(토지조서 등)는 해당 사업지구의 지적소관청에 비치하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시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화당지구 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조성사업 -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화당리 191-94번지 일원 화당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합니다.

2026. 8. 13.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인가 개요

- 가. 위 치 :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화당리 191-94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 명 칭 : 화당지구 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조성사업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12	팔탄면 화당리 191-110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94번지	일반 도로		화성시 고시 제2016-87호 (2016.03.07)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12	팔탄면 화당리 산41-5번지	팔탄면 화당리 산41-5번지	일반 도로			
시행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12	팔탄면 화당리 191-110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94번지	일반 도로			
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65	팔탄면 화당리 199-1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97번지	일반 도로		화성시 고시 제2016-87호 (2016.03.07)	
기정	소로	2	1	10	국지 도로	411	팔탄면 화당리 산41-5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반 도로			
시행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65	팔탄면 화당리 199-1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97번지	일반 도로			
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32	팔탄면 화당리 191-61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42번지	일반 도로		화성시 고시 제2016-87호 (2016.03.07)	
기정	소로	2	2	10	국지 도로	132	팔탄면 화당리 191-5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반 도로			
시행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32	팔탄면 화당리 191-61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42번지	일반 도로			
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32	팔탄면 화당리 199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21번지	일반 도로		화성시 고시 제2016-87호 (2016.03.07)	
기정	소로	2	3	10	국지 도로	135	팔탄면 화당리 191-2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반 도로			
시행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32	팔탄면 화당리 199-1번지	팔탄면 화당리 191-21번지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소로	3	1	6	특수 도로	17	팔탄면 화당리 191-87번지	팔탄면 화당리 196번지	일반 도로		화성시 고시 제2016-87호 (2016.03.07)	
기정	소로	3	1	6	특수 도로	17	팔탄면 화당리 산41-4번지	팔탄면 화당리 산41-4번지	일반 도로			
시행	소로	3	1	6	특수 도로	17	팔탄면 화당리 191-87번지	팔탄면 화당리 196번지	일반 도로			
결정	소로	3	2	6	특수 도로	4	팔탄면 화당리 198-87번지	팔탄면 화당리 198-11번지	일반 도로		화성시 고시 제2016-87호 (2016.03.07)	
기정	소로	3	2	6	특수 도로	4	팔탄면 화당리 198-7번지	팔탄면 화당리 198-7번지	일반 도로			
시행	소로	3	2	6	특수 도로	4	팔탄면 화당리 198-87번지	팔탄면 화당리 198-11번지	일반 도로			
결정	소로	2	1	8	특수 도로	8	팔탄면 화당리 198-14번지	팔탄면 화당리 198-14번지	일반 도로		화성시 고시 제2016-87호 (2016.03.07)	
기정	소로	3	3	6	특수 도로	8	팔탄면 화당리 198-7번지	팔탄면 화당리 198-7번지	일반 도로			
시행	소로	2	1	8	특수 도로	8	팔탄면 화당리 198-14번지	팔탄면 화당리 198-7번지	일반 도로			

- 녹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1	녹지	완충녹지	팔탄면 화당리 191-69번지 일원	10,381	화성시 고시 제2016-87호 (2016.03.07.)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팔탄면 화당리 산41번지 일원	10,464		
시행	1	녹지	완충녹지	팔탄면 화당리 191-69번지 일원	10,381		
결정	2	녹지	경관녹지	팔탄면 화당리 191-49번지 일원	6,176	화성시 고시 제2016-87호 (2016.03.07.)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팔탄면 화당리 산191-5번지 일원	7,799		
시행	2	녹지	경관녹지	팔탄면 화당리 191-49번지 일원	6,176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유서

- 도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호선	중로 3-1호선	시중점 지변변경 B= 12m, L= 312m, A= 3,738㎡ → 3,760㎡	- 지적분할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시중점 지변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소로 2-1호선	소로 1-1호선	시중점 지변변경 B= 10m, L= 411m → 365m, A= 4,137㎡ → 3,749㎡	- 기존 경관녹지 공원화를 위한 도로 구조 변경 및 지적분할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시중점 지변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 도로구분 오기 정정
소로 2-2호선	소로 1-2호선	시중점 지변변경 B= 10m, L= 132m, A= 1,252㎡ → 1,460㎡	- 지적분할결과 반영에 따른 시중점 지변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 도로구분 오기 정정
소로 2-3호선	소로 1-3호선	시중점 지변변경 B= 10m, L= 135m → 132m, A= 1,460㎡ → 1,395㎡	- 기존 경관녹지 공원화를 위한 도로 구조 변경 및 지적분할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시중점 지변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 도로구분 오기 정정
소로 3-1호선	소로 3-1호선	시중점 지변변경 B= 6m, L= 17m, A= 113㎡ → 111㎡	- 지적분할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시중점 지변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소로 3-2호선	소로 3-2호선	시중점 지변변경 B= 6m, L= 4m, A= 16㎡	- 지적분할결과 반영에 따른 시중점 지변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소로 3-3호선	소로 2-1호선	시중점 지변변경 B= 6m → 8m, L= 8m, A= 47㎡ → 49㎡	- 지적분할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시중점 지변 변경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 인근 농지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폭원확폭 - 도로구분 오기 정정

- 녹지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완충녹지	면적감소 10,464㎡ → 10,381㎡	-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위한 구역계 제척, 인근 농지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폭원확폭을 위한 면적 감소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지적분할결과 반영,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	녹지	경관녹지	면적감소 7,799㎡ → 6,176㎡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감소된 녹지 면적 추가 확보 및 지적분할결과 반영, 공사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 분	법인명(성 명)	주 소	비고
법인	발안테크입주자협의회	경기도 군포시 봉성로 92, 4층(당정동)	
대표	이창범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9년 12월 31일 (당초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공사완료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토지조서

중로3-1호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 계(기정)					5,507	3,738						
소 계(변경)					5,507	3,760						
1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28	답	631	631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2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21	답	1,121	850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기정	팔탄면 화당리	191-97	임	1,636	1,237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3	변경	팔탄면 화당리	191-97	임	1,636	1,259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4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72	임	291	291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5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94	임	499	499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6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42	임	1,243	144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7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53	임	8	8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8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108	임	1	1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9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110	임	77	77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소로1-1호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 계(기정)					5,915	4,137						
소 계(변경)					5,543	3,749						
1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17	답	213	213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기정	팔탄면 화당리	191-97	임	1,636	399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2	변경	팔탄면 화당리	191-97	임	1,636	377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3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31	임	294	294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4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55	임	322	322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 트)				
5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85	임	125	125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 트)				

5	추가	팔탄면 화당리	191-1 16	임	33	33	김*철 외 1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 ***동 ***호 (석우동,동***** *****트)				
	기정	팔탄면 화당리	191-4 8	임	981	981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6	변경	팔탄면 화당리	191-4 8	임	759	759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소로2-1호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 계(기정)					111	47						
소 계(변경)					461	49						
1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8-14	답	111	47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2	추가	팔탄면 화당리	198-15	답	350	2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소로3-1호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 계(기정)					675	113						
소 계(변경)					675	111						
	기정	팔탄면 화당리	191-87	임	675	113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1	변경	팔탄면 화당리	191-87	임	675	111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소로3-2호선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 계(기정)					675	16						
소 계(변경)					675	16						
	기정	팔탄면 화당리	191-87	임	675	16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1	변경	팔탄면 화당리	191-87	임	675	16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경관녹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 적(㎡) 합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 계(기정)					18,902	7,799						
소 계(변경)					6,176	6,176						
	제외	팔탄면 화당리	191-58	임	1,129	10	대**** ***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번길 **				
	제외	팔탄면 화당리	191-65	임	5,403	10	대**** ***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번길 **				
	제외	팔탄면 화당리	191-50	임	4,627	36	주***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 ***호 (***, *****트)				
1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68	임	241	241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2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82	임	405	405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제외	팔탄면 화당리	199	전	456	456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 로 ***-**, ***동 ***호 (능동,동***** 트)				
	기정	팔탄면 화당리	191-7	임	1,192	1,192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3	변경	팔탄면 화당리	191-114	임	430	430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기정	팔탄면 화당리	191-49	임	2,400	2,400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4	변경	팔탄면 화당리	191-49	임	2,083	2,083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제외	팔탄면 화당리	191-64	임	3,049	3,049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5	추가	팔탄면 화당리	191-9	임	1,645	1,645	이*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 (신정동, 삼****)				
6	추가	팔탄면 화당리	191-113	임	1,372	1,372	윤*우의 2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 (대림동)				

완충녹지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 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 계(기정)					10,548	10,464						
소 계(변경)					10,383	10,381						
1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8-13	답	46	46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기정	팔탄면 화당리	191-13	임	1,185	1,185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2	변경	팔탄면 화당리	191-115	임	1,163	1,163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3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92	임	24	24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4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69	임	5,242	5,242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5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56	임	171	171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6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62	임	189	189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7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11	임	400	400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8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12	임	1,336	1,336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9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90	임	14	14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10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89	임	192	192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11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3-6	답	709	709	강*희 외 21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12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8-8	답	327	327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13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8-15	답	350	350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14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8-23	임	56	56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15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1-63	임	1	1	강*희 외 19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16	변경 없음	팔탄면 화당리	198-16	답	163	163	강*희 외 20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원천로 ***-**, ***동 ***호 (능동,동***** 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조건

〈화당지구 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조성사업〉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개요

사업명칭	화당지구 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조성사업
사업위치	화성시 팔탄면 화당리 191-4번지 일원
사업규모	■ 중로3-1호선 B=12m, L=312m 외 6개노선 A=10,540m² ■ 녹지(완충, 경관녹지) A=16,557m²
사업시행자	발안테크입주사협의회 (경기도 군포시 봉성로 93, 4층)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 2029.12.31.까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 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민·형사상 포함)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시행자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신청 전 (약3개월 전) 무상귀속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인수인계조서, 설계도서 등(관련 서류는 실무부서와 협의)]를 구비하여 무상귀속 관련 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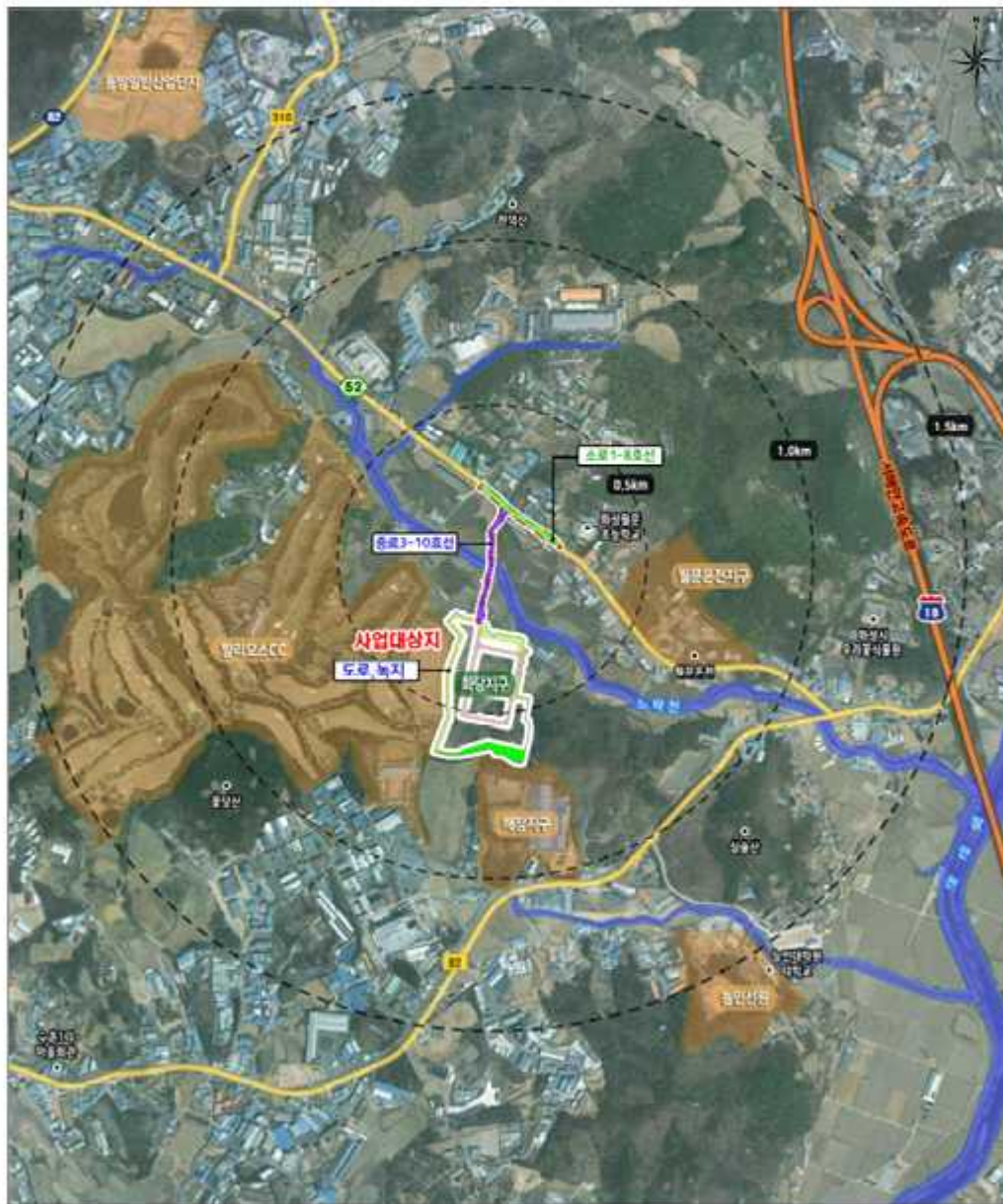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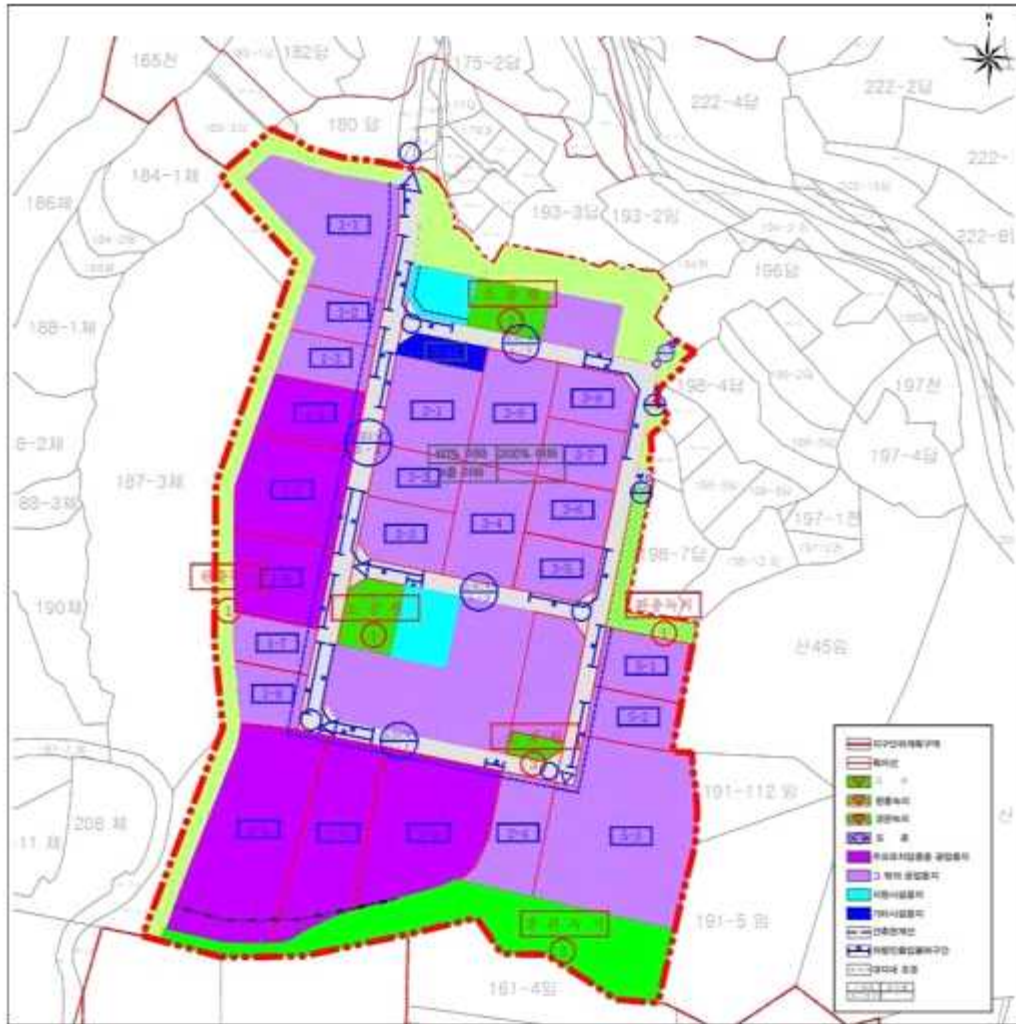
-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나. 준공조서
- 다. 설계도서
- 라.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사항
- 마. 각 실과소 무상귀속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공문(도로시설, 교통시설, 녹지 등)
- 바. 무상귀속 시설물 인수인계조서(도로시설, 교통시설, 녹지 등)
- 사. 무상귀속 시설물(도로, 녹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서류
- 아.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CD 제출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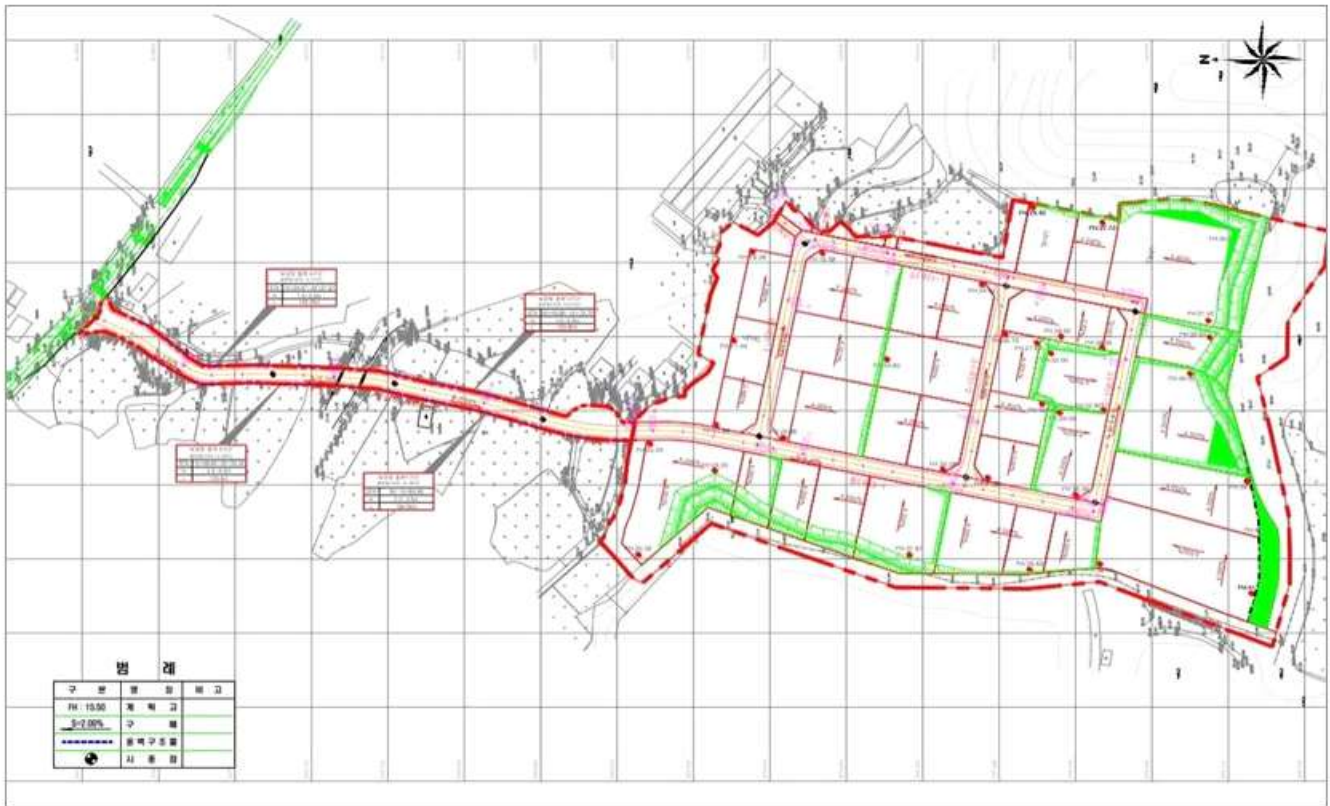
1 위치도

○ 위치 : 경기도 만성구 팔탄면 화당리 191-94번지 일원





3 공사계획평면도



4 우수계획평면도

